

국민연금공단 공무직(보안직) 공개채용 공고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는 공단 사옥의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할 공무직 지원자를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채용분야: 공무직(보안직)

※ 시보기간 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직(무기계약직) 정규 임용

채용분야 및 인원

| | | |
|------|----|-------|
| 채용분야 | 구분 | 보안직 |
| | 직급 | 주임(가) |
| 채용인원 | | 1명 |

수행업무

| 구분1 | 구분2 | 수행업무 |
|-----|-------|---|
| 보안직 | 주임(가) | · 직원 및 외부인 차량통제 및 안내, 사옥출입통제 및 수시순찰(출입문 시건 등) · 비상사태 시 응급대응, 계절별 공동업무 지원 및 업무분장으로 부여 받은 업무수행 등 |

근무장소: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지사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 바랍니다

지원자격

| 채용분야 | | 지원자격 |
|------|-------|--|
| 공통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 이상자는 제외) * 보안직: 만 65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 별지 1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 보안직 | 주임(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비업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별지 2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

※ (경력산정) 30일을 1개월로, 365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다수인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근무시간

| 구분 | 근무시간 |
|--------------|--|
| 보안직 주임(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시·단속적 근로형태로 운영 중인 기존 교대근무 방식 준용 ※ 교대근무는 3교대를 원칙으로 하되, 사옥 근무인원에 따라 2교대 또는 4교대로 근무할 수 있음 |

정년: 만 65세

보수월액(중식비 및 명절휴가비 포함,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별도)

| 구분 | 보안직 |
|------|---------|
| | 주임(가) |
| 연봉월액 | 2,243천원 |


※ 경력증명서는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하여 제출받으며, 연봉제를 적용함에 따라 호봉산정과는 무관함

2. 전형절차 및 일정

| 구분 | 내용 | 일정 |
|-----------|---|---|
| 지원서 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방법: 이메일 (nps1121@nps.or.kr)로만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하여만 인정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23.10.5.(목) ~10.12.(목) 18:00까지 |
| 서류 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요건 충족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는 각 항목별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 | 합격자 발표일 `23.10.20.(금) 개별통보 |
| 인성 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 미참여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검사결과는 면접전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 `23.10.21.(토) ~ 10.24.(화) 개별안내 |
| 면접 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방법: 조별면접(1개조 5명 이내, 조별 25분 내외) 실시 | `23.10.26.(목) ~ 10.27.(금) 면접일시·장소 개별안내 |
| 최종 합격자 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전형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 순으로 2명의 예비합격자 선발 | `23.11.3.(금) 개별통보 |
| 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보기간(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원직(무기계약직) 정규임용 | `23.11.8.(수) |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3.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내역  면접전형 시 제출 |
|-------------------|--|
| 공통 (대상자 전체) | <p>① (경력사항 관련) - 경력사항 기재자는 아래 사항 필수 제출(1-1, 1-2 모두)</p> <p>1-1) 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u>경력증명서</u> 전체</p> <p>1-2) <u>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1종</u>(예시: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p> <p>※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이 <u>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관련분야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u>,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과 일치해야 인정됨 (<u>경력·재직증명서 상 해당업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 불가</u>)</p> |
| | <p>② (우대사항 관련) - 해당자에 한함</p> <p>2-1)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포함),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p> <p>2-2)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p> <p>※ 2-1), 2-2) 증빙서류는 접수마감일(23.10.12.) 이후 발급한 원본 제출</p> |

4. 우대사항

| 구분 | 대상자 | 적용단계 | 가점 |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접전형 | 5/10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서류·면접전형 | 10 |
| 저소득층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 5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서류전형 | 5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 서류전형 | 5 |

-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하며, 분야별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은 부여하지 않고 동점자 발생시 우대함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지정 기간이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5.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격, 경력,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 부터 무단 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3개월 기간의 시보로 임용되며, 시보기간 중 근무 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됩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임용일 전

4대보험 퇴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23.11.3.~11.18.)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이메일(nps1121@nps.or.kr)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불가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서울북부지역본부(02-2176-9902, 9905)로 문의 바랍니다.

2023. 10. 5.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 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경비업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결격 사유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형법」 제114조의 죄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